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1870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1870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992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송권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손세규

변론종결 2021. 12. 16.

판결선고 2022. 1. 2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992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6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6.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는데 요구되는 사무실 준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원고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C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할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적절히 실시한 사정에 더하여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의 의무에 ‘원고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자문’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 D이 2019. 10. 10. 원고의 직원인 E 부장과 통화하면서 원고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하여 ‘서류만 접수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지체하냐’는 취지로 묻자 E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다고 그러더라고요’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D이 다시 ‘아니오, 이거 국토부에 문의를, 질의를 해야죠.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질의를 하죠’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를 볼 때 원고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는데 요구되는 사무실 준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성실에 반한 조건 성취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가 시설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원고는 위탁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1심에서 적절히 실시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가 원고에게 신속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진행과 유관기관에 관련내용을 확인해볼 것까지 독려하였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공모지침서를 충족시키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을 성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